

매점 사용허가 조건(특수)

【재산의 표시】

연번	소재지	시설명	용도	허가면적
1	용인시 초부로 220	용인자연휴양림 매점 및 커피숍	소매점	건물 : 144.09 m ² 토지 : 1,904.09 m ²

제1조(사용목적)

본 사용허가시설물(매점 및 커피숍)은 용인자연휴양림 안에 위치한 공유재산으로서,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약 상대방은 그러한 목적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조(사용기간)

본 계약의 사용허가기간은 2024년 11월 19일부터 2027년 10월 18일 까지로 한다.

제3조(사용자)

본 시설물은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고 등 제반 사항을 필한 후 직영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용료)

- 1차 년도 사용료는 낙찰금액(부가가치세 포함)으로 하며, 2차 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3항에 의거 산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.
- 2) 전기요금 등 모든 공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용료의 납부)

- 1) 계약상대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, 그러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계약(입찰) 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한다.
- 2)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용료 반환)

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. 다만 제14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시설물의 유지관리)

- 1)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을 사용관리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.
- 2) 계약상대자는 공익을 증진하여 시설물 이용자에게 항상 친절하여야 하며 안전 및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- 3) 계약상대자는 수 허가시설물의 수선 등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인시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

한다.

- 4) 계약상대자는 관리상 소요되는 일체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며 민법 제230조 또는 제626조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.

제8조(시설물의 사용제한)

계약상대자는 사전승인 없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1) 제1조에 명시한 업종 및 용도의 변경.
- 2)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권리를 임의로 전대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.
- 3)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.
- 4) 사용허가 받은 시설 이외의 시설을 임의 사용하는 행위.

제9조(연고권 배제)

계약상대자는 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.

제10조(책임과 의무)

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- 1) 법령에 의하여 허가·승인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된 것은 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2) 계약상대자는 소방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적정수의 소방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며,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- 3) 계약상대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오전 8시 이전 개점 및 오후 20시 이후 폐점하여야 하며, 운영시간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운영시간의 변동(휴무, 영업시간 단축 등)에 대하여 허가자와 협의하여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.
- 4) 계약상대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과 건물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고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- 5) 사용자는 사용 허가받은 면적을 넘어 상품을 적치하거나 파라솔 등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.
- 6) 계약상대자는 부주의로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.
- 7) 사용허가 받은 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인명 재산 또는 민·형사상 피해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.
- 8) 계약상대자는 용인시의 휴양림운영에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(대민친절 등)를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.

제11조(사업자등록 및 보험증서 제출)

- 1) 계약상대자는 계약시까지 수 허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계약상대자는 제3자의 신체에 영업행위로 인한 상해를 입혔을 때의 보상 및 허가받은 재산의 손괴 시 배상책임을 특약으로 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, **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원**

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 이 때 보증기간은 허가만료 후 30일까지로 한다.

- 3) 사용인은 임대시설의 건물, 각종설비, 장비 등 총 가액을 기준한 **화재보험** 및 허가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유상사용 수익허가재산의 감정가 이상에 해당하는 **손해배상 손해보험**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용인시 휴양림 관리사무소(산림과 휴양시설팀)에 계약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)

- 1) 음식의 판매행위는 내부로 제한함과 동시에 휴양림 내는 금연 구역이므로 담배의 판매는 금한다
- 2) 불량식품, 비위생적인 식품, 폭죽, 기타 미관·질서유지·안전 등에 위해한 상품을 진열,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3) 휴양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숯 등 판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4) 용인시의 판매품목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했을 지라도 계약상대자는 일체 변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.
- 5) 기타 영업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용인시의 지시에 따른다.

제13조(판매가격의 결정)

- 1) 계약상대자는 가격표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판매하여야 한다.
- 2) 인근소매점 판매가와 비교하여 판매단가가 높을 경우 용인시는 계약상대자에게 판매가 인하지시를 할 수 있으며, 사용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.
- 3) 본 조항을 위반할 시는 제16조의 기준에 의해 조치하며, 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.

제14조(사용허가의 취소)

용인시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- 1) 공용·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할 때
- 2) 사용인이 본계약 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를 위반하는 때
- 3) 기타 용인시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.

제15조(사용허가 취소 절차)

계약상대자가 가조건 제8조, 제14조를 위반할 시에는 사용허가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외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다.

위반횟수	조치사항	비고
1회	시정 및 주의	
2회	경고	
3회	영업정지 10일	
4회	허가취소	

※ 1년간 위반 횟수이며, 사용허가 취소 자는 다음 입찰 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
제16조(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)

- 1) 본 계약 조건의 위반으로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용인시

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.

- 2)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 또는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용인시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.

제17조(부대시설의 설치)

- 1) 시설 운영에 필요한 안내판, 파라솔, 기타 물품 등의 설치 시에는 용인시의 승인없이 할 수 없으며, 승인 후 지정된 면적 내에서 수 허가인이 자비로 설치하여야 하고,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원상복구 할 수 없는 영구 시설물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 하여야 한다.
- 2) 사용자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용인시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과 할 수 있다.

제18조(사용허가 재산의 반환)

- 1) 본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취소(폐업포함)로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수 허가인이 용인시가 지정하는 기일 내 상품 및 물품 등 수 허가인의 소유물을 옮기고 제3자의 영업 또는 타 용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본래 형태로 회복하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.
- 2)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용인시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수 허가인에게 부과 할 수 있다.

제19조(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)

본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은 일체 용인시의 지시 및 감독을 받으며, 용인시의 지시 및 감독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익년도 이후 응찰 부적격자로 처리할 수 있다.

제20조(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경우 변상금 징수)

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「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 법」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.

제21조(조건변경)

휴양림 시설 관리상 용인시가 필요할 때에는 본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.

제22조(어구의 해석)

본 계약에 대하여 어구의 해석이 쌍방 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용인시의 해석에 따른다.

소관부서	농림축산국 산림과	담당자 직·성명	녹지8급 최정은	전화번호	031-6193-3849
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